

##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감사위원 성명 공고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 제2항(결산서 등의 제출)에 따라  
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감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 
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일

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



1. 검사기간 : 2023. 4. 3. ~ 4. 30.
2. 감사위원

직 위	성 명	비 고
대표위원	정 재 천	동작구의회 의원
위 원	김 은 하	동작구의회 의원
위 원	고 영 호	세무사
위 원	양 경 섭	세무사
위 원	김 훈 찬	세무사
위 원	이 종 현	공인회계사

3. 검사의견서 : 따로 붙임